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27
----------	------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이종배 의원(찬성 20명)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종배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5만8천417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 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천205명으로 나타남.

-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장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4. 02. 14.~ 2024. 02. 18.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자연유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능력을 갖기 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된 상태, ‘사산’은 임신 20주 이상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사망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함¹⁾.
- 국회 검토보고²⁾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함.

< 최근 5년간 유산·사산 통계³⁾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 산	108,166	106,173	101,941	95,556	91,973
사 산	451	361	353	357	295

* 자료: 국회 검토보고(2023. 2.) p.33에서 재인용

- 실제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

1) 자료: 김동식, 김영택, 정연주, 동제연, 김세롭(2023),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3.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idx=131935>

2) [제403회 국회(임시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45호), p32.

3) [제403회 국회(임시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45호), p33.

-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현황으로 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이 제외되어 있음.

4)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한 지원사업의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을 개정(신설 2024. 1. 2.)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예정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 4. <생략>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시행일: 2025. 1. 3.]

- 본 개정안은 이처럼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난임부부”를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등으로 수정함
- 개정안은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제1조), 지원대상(제5조) 조항 등을 포함하여 조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임부부”를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u>조례</u>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u>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난임극복</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난임부부</u> 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난임, 유산·사산극복</u> ----- ---- <u>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u> -----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난임극복</u>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난임, 유산·사산극복</u> ----- -----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
<신설>

-----.

② ----- 난임, 유산·사산부부의 -----
극복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사산극복 -----

-----.

제5조(지원대상) -----

----- 난임, 유산·사산부부-----

-----.

제6조(실태조사 등)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
--- 난임, 유산·사산 원-----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
--.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② (생략)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 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지원 중단) ----- 난임, 유산·사산부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난임, 유산·사산극복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난임, 유산·사산극복 -----

-----.

-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제정됨.
- 이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 등의 모든 내용은 현재 난임부부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생략.>

제8조~ 제11조<생략.>

-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유산·사산 지원’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제명이나, 목적(제1조), 지원대상(제5조) 등 변경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입법목적에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짐.

- 단, 입법과정에서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극복’은 ‘사산’과 띄어 쓸 필요가 있음. 참고로 「모자보건법」에서도 아래 ‘권고안’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있음.

개 정 안	권 고 안
난임, 유산·사산극복	난임, 유산·사산∨극복

나. 유산·사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개정안 제7조제2항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주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시행예정 「모자보건법」	개 정 안
<p>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p> <p>② <생략.></p> <p>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p> <p>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p> <p>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p> <p>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시행일: 2025. 1. 3.]</p>	<p>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p> <p>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p> <p>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p> <p>[시행일: 2025. 1. 3.]</p>

- 또한,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은 상위법 시행일과 일치시켜 2025년 1월 3일부터로 정하였는데, 시행일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관련부서가 시행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소관부서 역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유산”, “사산”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 신설, 조례명을 변경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3 종합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제정됨.
- 이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 등의 모든 내용은 현재 난임부부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을 개정(신설 2024. 1. 2.)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본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명이나, 목적(제1조), 지원대상(제5조) 등 변경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입법목적에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짐. 또 ‘지원사업’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끝으로,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은 상위법 시행일과 일치시켜 2025년 1월 3일부터로 정하였는데, 시행일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관련부서가 시행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2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의원(20명)

1.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5만8천417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천205명으로 나타남.
-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장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난임부부”를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난임부부의 난임”을 “난임, 유산·사산부부의”로, “난임극복”을 “극복”으로 한다.

제4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제5조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한다.

제6조 중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으로, “난임 원”을 “난임, 유산·사산 원”으로, “난임극복 지원에”를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제11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난임극복</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난임부부</u>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난임극복</u>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난임부부</u>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u>난임극복</u>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난임</u> <u>극복</u>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난임, 유산·사산극복</u> ----- --- <u>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u>-----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난임, 유산·사산극복</u> ----- ----- ----- -----.</p> <p>② ----- <u>난임, 유산·사산부부의</u> ----- <u>극복</u>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난임, 유산·사산극복</u> -----</p>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
<신설>

-----.

제5조(지원대상) -----

----- 난임, 유산·사산부부-----

-----.

제6조(실태조사 등)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
--- 난임, 유산·사산 원-----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
--.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② (생략)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
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
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
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지원 중단) ---- 난임, 유
산·사산부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난
임, 유산·사산극복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난
임, 유산·사산극복 -----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 유산·사산 임신부 지원 비용
 -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7조(지원사업)제2항	○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을 변경·신설함에 따라 유산·사산 부부 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제1호 유산·사산 예방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은 기존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활용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
 - 예외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추진 중인 유사사업²⁾을 준용(100,000천원)하여 추정해볼 수 있으나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어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 또한 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제2호의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도 센터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
 - 기존 센터를 활용할 경우 지원대상 확대(600명 증가)에 따라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상주 인력³⁾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가 곤란함
 - ※ (지원대상) 지원대상⁴⁾은 2021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통계청 발표)에 따른 서울시 태아사망자 수를 고려하여 600명으로 전제(붙임2 참고)

1) 현재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붙임1 참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사회복지사의 상담 등을 통해 난임 예방 교육·정보를 일부 제공하기에 유산·사산 예방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2024년 예산 100,000천원
 - 지원대상 : 초기 난임부부 및 신혼부부 100쌍
 - 주요내용 : 통합관리(교육·상담·심리)프로그램 운영

3) 강남센터(센터장/부센터장/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 송파센터(센터장-수시/부센터장-수시/사회복지사 2인)

4) 임신중절에 따른 인공유산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1] 2024년 서울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사업

사업목적

- 난임부부, 임신부 및 양육모 대상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 완화로 삶의 질 향상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12.(연례반복)
- 지원대상 : 난임부부 및 임신부, 양육모(가족)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공모선정으로 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의 주요내용 : 난임부부 및 임신부, 양육모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향후 기대효과

-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심리상담 등 지원으로 정서적, 심리적 문제 완화 및 삶의 질 개선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338,000,000원	= 338,000

자료 :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설명서 발취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현황

구분	강남 상담센터	송파 지역 상담센터
위치	·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 (2동 3층)	·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관 8층
규모 시설	· 면적 : 55.24㎡ · 상담실, 사무실	· 면적 : 68.04㎡ · 상담실, 집단치료실, 사무실
운영 인력	·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부센터장(산부인과 전문의) · 임상심리사 1명(팀장) · 사회복지사 1명(팀원)	·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수시 · 부센터장(산부인과 전문의)-수시 · 사회복지사 1명(팀원) · 사회복지사 1명(팀원)
주요 기능	· 사업총괄, 운영위원회 운영 · 심리상담 및 통합 정신건강 평가,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내원 대상자)	· 심리상담 및 통합 정신건강 평가,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대상자) · 의료서비스 필요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협력 의료기관에 연계 · 집단치료 운영 등
관련 사진	 <p><세브란스병원 상담실 내부></p>	 <p><송파상담실 외부></p>

자료 : 서울시 시민건강국

[붙임2] 시도별 태아사망자 수 및 사망률 통계

[표 30] 시도별 태아사망자 수 및 사망률(2020-2021)

(단위: 명, 총출생아 천 명당 명, %)

	시도별 태아사망자 수				시도별 태아사망률				총출생아 수*	
	2020년	2021년		증감	2020년	2021년	증감	순위		구성비
		구성비								
전국	3,205	3,152	100.0	-53	11.6	12.0	0.3		263,714	100.0
서울	515	537	17.0	22	10.7	11.7	0.9	9	46,068	17.5
부산	159	166	5.3	7	10.4	11.4	0.9	13	14,612	5.5
대구	165	135	4.3	-30	14.5	12.5	-2.0	6	10,796	4.1
인천	182	188	6.0	6	11.2	12.4	1.2	7	15,135	5.7
광주	70	93	3.0	23	9.5	11.6	2.1	10	8,049	3.1
대전	119	102	3.2	-17	15.7	13.6	-2.1	4	7,516	2.9
울산	69	67	2.1	-2	10.3	10.8	0.5	15	6,194	2.3
세종	36	31	1.0	-5	10.3	8.6	-1.7	17	3,601	1.4
경기	928	886	28.1	-42	11.8	11.5	-0.3	11	77,025	29.2
강원	68	78	2.5	10	8.6	10.5	1.9	16	7,435	2.8
충북	130	139	4.4	9	14.9	16.7	1.8	1	8,329	3.2
충남	156	121	3.8	-35	12.9	10.9	-2.0	14	11,105	4.2
전북	119	109	3.5	-10	14.4	14.4	0.0	3	7,584	2.9
전남	101	98	3.1	-3	10.3	11.5	1.2	12	8,528	3.2
경북	138	157	5.0	19	10.6	12.9	2.3	5	12,202	4.6
경남	208	189	6.0	-19	12.2	12.0	-0.2	8	15,751	6.0
제주	42	56	1.8	14	10.4	14.8	4.4	2	3,784	1.4

자료 : 통계청 2021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